



# 해외조세동향보고

Issue 8, 2009년 09월

## OECD 본부 동향

### OECD 이전가격세제가이드라인 개정

#### □ 이전가격세제 지침 (Transfer Pricing Guidelines) 개정 예정

- 2009년 9월, 이전가격세제 지침 개정을 위한 공공의견 청취 예정 (제1장 ~ 제3장)
  - 이번 개정작업은 2006년 5월에 시행한 "비교가능성에 대한 문제; Comparability", 2008년 1월의 "거래이익법; Transactional Profit Methods"에 대한 의견 청취와 개정작업 등이 진행되었으며, 2008년 9월에는 2일간의 일정으로 관련 회의가 진행되었음
- 금번 개정 작업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
  - 이전가격산정방법 개정
    -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전가격 산정방법은 전통적 거래방법 및 거래이익법 등 크게 2가지로 분류
    - 거래이익법은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와 Profit Split Method로 구분되는데 현재 이러한 이전가격산정방법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됨

⇒ 전통적 거래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래자료가 전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됨

- OECD는 금번 개정에서 거래이익법의 예외적용 규정을 삭제하고, 일반적인 적용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

- 비교가능성 분석 (Comparability Analysis)

- 현재의 비교가능성 분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3장에 기술 예정

- 부록

- 거래이익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Working Capital Adjustment에 대한 사례를 수록할 예정

- 금번 개정작업과 관련한 의견은 2010년 1월까지 OECD 조세 정책행정센터에서 취합하여 개정작업에 반영할 예정

## OECD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, 탈세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

### □ 유럽 내 탈세 방지를 위한 협력

-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개최 전, OECD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(Council of Europe)는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
- 보다 긴밀한 국제적 협조를 담보하기 위해 조세협력과 관련된 OECD 상호행정지원협약 및 1988 집행위원회 협약을 개정하기로 함

- 새로운 규정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정보교환과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며, 특히 은행정보공개 관련 법률 개정도 포함됨
- 본 협약은 OECD와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,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협정에 참여하고, 비준함

## **G20 지도자들, 투명성 확보와 정보교환 확대를 환영**

### **□ 조세피난처,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공동책임 재확인**

- G20 정상회담의 결과로 조세피난처, 자금세탁, 부패, 테러리스트 자금확보 등과 같은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비협조적 국가에 대한 공동대응을 재확인
- 또한 비회원국을 포함한 투명성 확보와 정보교환 (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)을 위한 Global Forum 확대를 환영하고, 2010년 3월부터 이미 마련된 조세 피난처에 대한 대응책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